

서울특별시 성북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



성 북 구
(자치행정과)

서울특별시 성북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

의안 번호	160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 : 2023년 9월

제출자 : 성북구청장

1. 제안이유

2023년 1월 1일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라,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·운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향사랑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성북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기금설치 개요

- 1) 설치근거 :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30조
- 2) 설치목적 : 모금·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 관리·운용
- 3) 설치연도 : 2023년

나. 기금운용 개요

1) 기금재원(수입)

-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·접수한 기부금
-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
-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

2) 기금용도(지출)

-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·보호
- 지역 주민의 문화·예술·보건 등의 증진
- 시민참여,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
-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 등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

3) 2023년도 기금사업 개요

- 2023년 모금된 기부금 전액 예치

4) 기금조성 현황

(단위 : 천원)

'22년도말 조성액 ㉑	'23년도 기금운용계획			'23년도말 조성액 ㉑=㉒+㉓
	수입㉒	지출㉔	증감 ㉒=㉓-㉔	
-	12,064	-	12,064	12,064

다. 자금운용계획

1) 자금수지 총괄

(단위 : 천원)

수입계획				지출계획			
항 목	'23년 수입액	전년도 수입액	증 감	항 목	'23년 지출액	전년도 지출액	증 감
합 계	12,064	-	12,064	합 계	12,064	-	12,064
전입금	9,705	-	9,705	비용자성 사업비	-	-	-
보조금	-	-	-	용자성 사업비	-	-	-
차입금	-	-	-	인력운영비	-	-	-
용자금회수 (이자 포함)	-	-	-	기본경비	-	-	-
예탁금 원금회수	-	-	-	예탁금	-	-	-
예치금회수	-	-	-	예치금	12,064	-	12,064
예수금	-	-	-	차입금 원리금 상환	-	-	-
이자수입	64	-	64	예수금 원리금 상환	-	-	-
기타수입	2,295	-	2,295	기타지출	-	-	-

2) 수입계획

(단위 : 천원)

장	관	항	목	'23년 수입액	전년도 수입액	증 감	산출내역
200 세외수입							
	210 경상적세외수입						
		216 이자수입					
			216-01 공공예금 이자수입	64	-	64	구금고 예치금 이자수입
	220 임시적세외수입						
		216 기타수입					
			224-03 기부금 수입	2,295	-	2,295	기금설치 후 기부금 수입
700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							
	720 내부거래						
		721 전입금					
			721-03 기타회계 전입금	9,705	-	9,705	기금설치 전 기부금 수입 (일반회계 전입금)
수 입 합 계				12,064	-	12,064	

3) 지출계획

(단위 : 천원)

조직	부문	정책	단위	세부	편 성 목	'23년 지출액	전년도 지출액	증감
자치행정과								
	재정·금융							
		재무활동						
			보전지출(고향사랑기금)					
				602 예치금				
					602-01 일반예치금	12,064	-	12,064
지 출 합 계						12,064	-	12,06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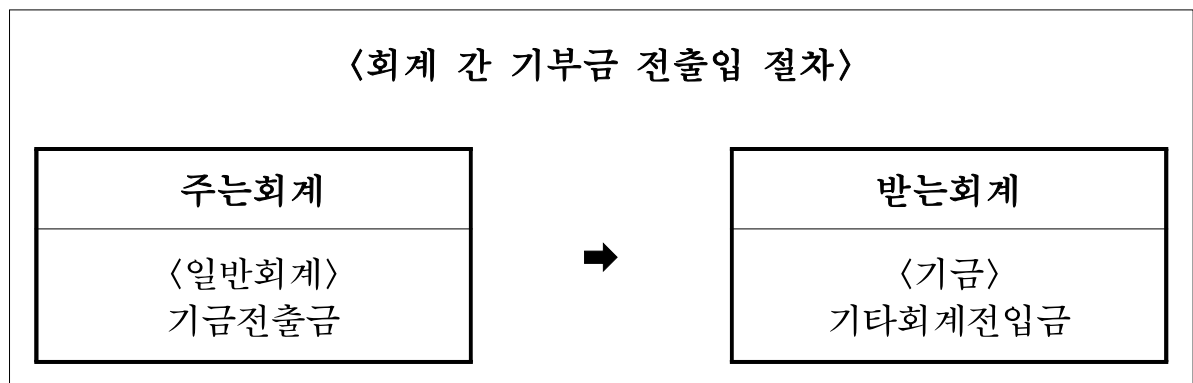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」 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
- 2)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 11조(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)
- 3)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조(고향사랑기금의 관리·운용)
- 4)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운용 등에 관한 조례」 제13조
(고향사랑기금의 설치)
- 5)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」 제30조(고향사랑기금)

나. 예산조치

- 1) 기금 설치 전 모금된 기부금은 일반회계 세외수입(과목: 기부금 수입)으로 처리되고 있었으며,
- 2) 기금 설치 후에는 기 모금액을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하고, 새로 모금되는 기부금은 기금으로 직접 수입처리 예정임



다. 협의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서울특별시 성북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해당사항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제2항제1호

제11조(비용추계서 작성)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. 다만,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 생략

4. 작성자

행정문화국 자치행정과장 고 영 룡